

「가시화되어가는 GR에의 총체적 대응의 시급성」



한상욱 / 아·태환경경영연구원장

자연훼손, 환경오염, 건강장해, 자원고갈 등을 내용으로라는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이용,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인간활동에서 비롯되어,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와 새로운 과학기술이 상호 얹혀 문제의 도가 더해지며, 그 양상도 생태계교란, 자연파괴, 인간건강 장해로 진전되고 더 나아가 자원의 고갈로 경제활동 자체의 지속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특정지역에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와 있으며 지구적 규모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지구가 언제까지 인류의 활동을 지탱하여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의 제기와 함께 도처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환경문제가 범세계적인

초미의 해결과제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이 자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이를 교역상대국에도 준수토록 요구하며 이국간 또는 다국간에 각종의 국제환경협약이 준비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선진각국이 환경보호를 표면상의 명분으로 하면서도 자국의 우월한 환경기술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저의에서 자국보다 느슨한 환경규제하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한 배격운동 또는 환경상계관세부과 등 무역거래의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UR타결 이후 세계무역논의의 주요 주제로서 환경문제를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른바 선진화된 환경기준을 경쟁력우위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라운드가 곧 본격화할 전망인 바 우리와 같이 환경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들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몇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듣다면, 최근에 타결된 UR최종협정문의 전문에 지구환경보전의 의지가 표명됨과 더불어 부속협정인 『위생대책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서 환경과 건강문제를 포함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GATT체제를 대신할 WTO(세계무역기구)가 이를 보다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이며,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환경관리, 환경감사, 환경표시, 환경성과평가등 기업경영의 환경부문을 표준화하여 '96년부터 ISO 18000시리즈로 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미국이 1990년 대

기정화법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배출가스규제 등 오염물질배출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수입물품에도 적용토록 하는 한편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에 환경문제를 차기라운드의 주제로 상정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으며,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포장재폐기물의 규제를 강화하여 수입물품에도 적용하는 등 환경문제와 무역문제가 결부됨으로써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자세의 전환, 그리고 이에 기초한 대책의 마련과 이행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국가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고 환경규제가 느슨한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이행 등 국제적 환경장벽의 지혜로운 극복이 없이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불가능해지고 국제사회에서도 낙오자가 될 것이며,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러한 정황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 환경장벽에 대하여 아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농수산물, 서비스산업 등의 개방이 필연적으로 닥쳐 올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UR협상의 타결을 맞아 온 나라가 충격의 여파에 쓱여 있는 상황에 비추어 조만간에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그런 라운드에 대한 대비가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환경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조속히 재점검을 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화·개방화에 걸맞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문제와 결부된 국내외 상황은 물론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부합되도록 환경기준을 강화하며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구, 법령, 제도 등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환경문제를 구실로 한 무역거래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체질의 개

선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경영전략을 조속히 수립 실천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은 통상의 자유화와 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환경주의 사조에 부응하는 생활방식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정부부처, 대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대응방안수립이 모색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그린라운드에의 대응은 본질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가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국회와 경제, 사회 각 단체들의 역할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행정면에서의 대응도 관련부처들의 종합조정적 정책연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환경논의에 대한 대책기구를 환경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산업, 통상 및 외교에 관계되는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외무부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고, ISO환경인증에 대한 대책기구는 공업진흥청과 함께 환경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역·환경에 관련된 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및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1년이상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2년 6월 대통령이 발표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에서 국내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국민, 단체 등의 역할의 대강이 천명되었는 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가시화되어가는 GR에의 대응에 지름길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하며 이의 성패여부는 세계의 지구촌화(One Global Village), 하나의 세계경제화(One Global Economy)시대에 적응하는 정부, 기업, 국민의 의식과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본다.